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19
----------	-------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한민수 · 이연희 · 박상혁
이해식 · 박균택 · 박해철
송옥주 · 김영호 · 한병도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정당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정 선거” 또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유포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으로는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처벌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정당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하여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제52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2조의2 및 제6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허위사실공표죄) 특정 정당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하여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의2(양벌규정) 정당의 대표자나 정당 또는 대표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정당 또는 대표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정당 또는 대표자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정당 또는 대표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헌행과 같음)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 ----- ----- ----- ----- ----- <u>. 이 경우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u>
③ (생략) <신설>	③ (헌행과 같음) <u>제52조의2(허위사실공표죄) 특정 정당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하여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u>

<u><신 설></u>	<u>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61조의2(양벌규정) 정당의 대표</u> <u>자나 정당 또는 대표자의 대리</u> <u>인·사용인, 그 밖의 정당의 간</u> <u>부인 당원이 그 정당 또는 대</u> <u>표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u> <u>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u> <u>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정당</u> <u>또는 대표자에도 해당 조문의</u> <u>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정</u> <u>당 또는 대표자가 그 위반행위</u> <u>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u> <u>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u> <u>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u> <u>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